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521 호
 1975.9.19.

시 보

차 례

◎ 조 례

- 제 977 호 : 서울특별시 묘지및 강제감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3
- 제 978 호 : 서울특별시 혼·분식실천강화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 3

◎ 규 칙

- 제 150호호 호 :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
 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4
- 제 1511 호 : 서울특별시 불탑건물개발사업보증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4
- 제 1512 호 : 서울특별시 가스공급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고 시

- 제 146 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인가 15
- 제 147 호 : 서울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폐지) 19

㉡ 공 고

- 제 218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0
- 제 222 호 : 도시계획사업(공용외청사) 시행자지정승인 25
- 제 223 호 : 화재경계지구 지정해제 26
- 제 224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9
- 제 226 호 : 환기에정지 지정공고 41

조 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 묘지 및 강제장사용토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조례제 977 호

서울특별시 묘지및 강제장사용토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묘지및 강제장사용토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묘지 사용 토
일반묘지 3.3㎡에 대하여 300 원

부 칙

이 조례는 197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혼·분식실천강화협의회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조례제 978 호

서울특별시 혼·분식실천강화
협의 회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혼·분식실천강화협의
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①항중 "위원 15"를"위원
16"으로, ③항 단서중"제 11 호 내지
제 13 호에"를"제 11 호 내지 제
15 호에"로 11 호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13 호다음에
14 호 및 15 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4. 양곡소매상 대표 1명

15. 가공공장 대표 1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 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준 인

1975년 9월 19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제 1501 호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1 호 및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조례제 8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구역은 부과총액의 100분의 50
- 2. 조례제 8 조제 2 항제 1 호의 구역은 건호부과비율의 100 분의 25를 가산

제 4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전조제 2 호 규정에 의한 100분의 25 가산부과비율은 도로에 접한

토지길이의 비례로 산정부과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불량건물개량사업 보조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준 인

1975년 9월 19 일

◎ 서울특별시 규칙제 1511 호

서울특별시 불량건물개량사업 보조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불량건물개량사업 보조금지급조례(이하 "조례" 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은 조례제 3 조의 지역에 불량건물을 소지한자로 조례제 5 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사무의위임)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관할구청장이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미리 " 불량진물계량사업보조금 지급방침 " 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조례제 3 조 및 시행규칙제 2 조에 의하여 작성한 지급대상자명부
2. 불량진물계량사업계획서
3. 현황사진

제 5 조 (보조금 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보조금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보조금의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시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토록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지급신청서 (별지제 1 호)
2.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

제 6 조 (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여부와 불량진물의 계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조금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보조금지급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조 (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방식이 결정되었다 하여도 보조금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보조금지급액) 조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제 4 조 및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량천물개량사업발원이 결정되고 시행당시까지 정비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보조금은 이 규칙에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별표 1>

보 조 금 지 급 신 청 서

1. 대 상 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2. 개 량 위 치 : 구 동 번지

3. 개 량 일 시 : 년 월 일

4. 신 청 액 : 원

19

신청인

(인)

구 설 장 귀하

첨부: 1. 주민등록 등본 1 통

2. 인감증명 1 통

서울특별시 가스공급조례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75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손 인

○서울특별시규칙제 1512 호

서울특별시 가스공급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가스공급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공사의신청) ①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시식에 의하여 본특별시 가스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1항을 "본관 및 지관"을 "본지관, 공급관 및 내관의 부설공사로 일반건설사업"을 "일반건설업"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능력

시공기술자 1인이상으로도 하되 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 또는 고

압가스 화학기능사보 자격증을 소지한자라야 한다.

2. 자본금

불입자본금 또는 재산평가액이 300만원이상이어야 하며 영입자 납세번호증을 소지한자라야 한다.

제5조중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을 "조례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으로 "제3호재산증명서"를 "3호재산평가조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로 "제4호영업장"을 "4호영업자납세번호증"으로 하고 "6호 실적증명"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시공업자의 업무구역등) ①

서울특별시장이 시공업자를 승인할 때는 업무구역을 제한하거나 시공업자의 구역별 정원을 규정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시공업자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제3호시식의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 2,3,4,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 조의 2 (공사범위등) ① 조례 제 5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범위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 시행한다.

1. 내관의 신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가스미터기로부터 가스렌지까지).

2. 연소기구의 연결 또는 제조

(2) 내관의 신설 및 사용의 중지 폐지후 가스불 사용료지 할 때는 별지제 6 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조의 3 (공사비기준액고시) ① 조례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기준액의 고시는 년 1 회로 한다. 다만, 달가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때는 이윤 변경 고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고시는 제 7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한하며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고시한다.

1. 연결공사

가스관의 종류, 구경 및 길이별기준

2. 개조공사

기구의 종별 및 분구수별기준

제 7 조의 4 (공사비의 부담) 조례 제 7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로 부담하는 공사비는 독립주택의 가스수요에 한하며, 그 부담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급관 해당부분의 공사비중 도로복구비 해당액

2. 공급관 해당부분중 수요가의 대지경계에서 연장 12 m 을 초과하는 부분의 공사비

제 7 조의 5 (가스미터의 보호관리) 조례 제 13 조의 2 에 의한 가스미터의 훼손, 부식등의 방지 및 검침장애등을 제거하기 위한 가스미터의 보호관리에 따른 조치명령을 별지제 7 호서식에 의거 시행한다.

제 11 조중 제 1 호를 삭제한다.

제 14 조중 "별지제 6 호서식" 을 "별지제 8 호서식" 으로 한다.

제 16 조제 1 항을 "별지제 7 호, 제 8 호

서식"을"별지제 9호서식"으로 하고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례제 24 조제 2항의 고지카-드
는 별지제 10 호서식에 의한다.

제 17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7 조 (과액도처분기준) 조례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과액도의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 액 도 처 분 기 준

처 분 기 준	과 액 도 처 분 기 준	
	조례제 26조제 2항(과액도)	조례제 26조제 1항(과액도)
사용료불 면탈한 목적으로 미터기 파손시	5,000 (원)	5 (배)
봉 인 파 손 시	5,000	3
공급의 정지중 무단사용	5,000	5
공급의 중지중 무단사용	3,000	2
미터기이전 부정연결사용시	5,000	5
미터기 무단이설	5,000	
내관공사의 임의시행	5,000	5
부 정 시 공 업 자	5,000	
별지 : 제 1, 2, 3, 6, 7, 8, 9, 10 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별지제 1호서식>

가 스 공 사 신 청 서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통 반)

성 명 건 화

본인이 상기 장소에 귀사가 공급하는 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으로 신청하니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건

1. 본인이 설치한 가스공급장치는 이를 일체 시인 기부채납한다.
2. 가스공사 시공도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납부하지 못할 시는 공사를 중단하여도 이의가 없다.
3. 공사비불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때는 시설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서울특별시 가스공급 조례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 압류처분을 행하여도 이의가 없다.
4. 공사비계산액과 정산은 서울시공사비기준표에 따른다.
5. 공사후 가스를 사용할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서기 197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가스공사시공업 자승인신청서 (신규)

소재지 :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생년월일
 자본금 : (개인) 재산평가액 (법인) 공채자부금
 투입자본금
 종업원수 : 사무원 현장관리인 명 사용자 명

가스시공업이외에 행하는 영업의 종류 :

서울특별시 가스시공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 하나이다.

197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이력서 (대표자, 기술자 각 1부).
2. 신원증명서 (대표자, 기술자 각 1부).
3. 재산평가조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4. 영업자 납세번호증.
5. 자책 또는 면허증 사본.

<별지제 3호서식>

사
진

가 스 시 공 업 자 지 정 서

계 호 :

상 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위의 자를 서울특별시 가스시공업자로 지정함.

197.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별지제 6 호서식>

가 스 공 급 신 청 서

접수번호 : _____

1. 가스전소제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통 반)

2. 가스전소유자 :

3. 가스메타번호 :

4. 공 사 내 역 :

5. 특 기 사 항 :

서기 197 년 월 일

신고인 ②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소장, 귀하.

<별지제 7호서식>

가스미터보호관리조치명령

가스건 번호		성명	
주소			
보호조치사항		개선할사항	
이행기간			
<p>가스공급의 원활을 위하여 귀역에 설치한 가스미터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개선을 명 합니다.</p> <p>만약, 위 기한내에 완전 이행치 않을시는 가스공급 중단등의 불미스러운 처분을 당하게 되오니 가스미터 보호관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별지제 8 호서식>

주 소 장

가스전책호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구 분	년 도	월 분	고 지 금 액	가 산 금	합 계
가 사 용 료					
가 스 세					
손 료					
합 계					

귀하의 가스사용료가 위와 같이 책정되었으니 당소에서 기이 고지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197 년 월 일까지 지정된 곳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 기한이 경과되면 공급의 정지 또는 제산차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납부처 : 1. 상업은행 본, 지점.

2. 구청, 출장소내의 시금고 수납창구

197 년 월 일

도. 시 가 스 사 업 스 장

원 부 (가스)					
과 목	가 스 사 용 료				
년도	월분	채 호		조정 량	㎡
주 소	서울특별시 아파트 구 동 호				
성 명					
납 부 기 분	기 한	가 사 용 료	가 스 세	손 로	합 계 액
납기내	년 월 일 까지				
납기후 (가산 포함)	년 월 일 부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수입일부인</div> </div>					
(수 납 은 행 동)					

< 별지 제 9 호 서식 >

영 수 증 (가스)					
과 목	가 스 사 용 료				
년도	월분	채 호		조정 량	㎡
주 소	서울특별시 아파트 구 동 호				
성 명					
납 부 기 분	기 한	가 사 용 료	가 스 세	손 로	합 계 액
납기내	년 월 일 까지				
납기후 (가산 포함)	년 월 일 부터				
위의 금액을 영수 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수입일부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취급자인</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은행</div>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주 은행취급자인이 없으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41-16

제 521 호

서

보

1975.9.19

2323

서울지계 9호서식 >

남입필봉지서 (가스)					
과목	가스사용료				
년도	월	채	조	계	필
	본	호	정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호 아파트				
성명					
납기분	기	한	가	스	손
			사	용	로
			로	가	스
			세	손	로
			합	계	액
납기내	년 월 일까지				
납기후 (가산 포함)	년 월 일부터				
위 금액을 영수함					
수입일부인	은 별				
	수입금 출납원 기하.				

남입고지서 및 남입필봉지서 (가스)					
과목	가스사용료				
년도	월	채	조	계	필
	본	호	정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호 아파트				
성명					
납기분	기	한	가	스	손
			사	용	로
			로	가	스
			세	손	로
			합	계	액
납기내	년 월 일까지				
납기후 (가산 포함)	년 월 일부터				
남부처: (납기내) 시내시 공금 수납 대덕은행 본지점.					
수입일부인	(납기후) 1. 삼인은행 본점 지점. 2. 구청 출장소내의 시금 고 수납창구 197년 월 15일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소장				
(도시가스사업소 수납부 소인용) 납기내가 경과하면 복록장 납부없이 납기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521호
시
보
1975.9.19 41-17

<별지제 10호서식>

가스요금을 우선 이 카드로 알려 드립니다.
다.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스 요 금 고 지 카 드

197

검침일자 월 일		계량기 지 칩	사용량	저정 납기	고 지 액				납부 기한	검침 확인
					가 스 사용료	손 료	월부액	한계액		

가스건소재지	동 가 번지 호		
가 스 번 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소유자</td> <td style="width: 40%;">사용자</td> </tr> </table>	소유자	사용자
소유자	사용자		

위 고지액을 기한내에 고지서에 기재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장

- 가스요금을 내시면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실시요.
- 이 카드에 납부 확인하였거나 영수표시한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카드에 고지된 금액은 납기계시일부러 확정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1달의 가산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46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 (학교)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80 호 (75. 6. 3)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 26 조와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4.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연세대학교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9. 19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산 9 - 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연세대학교)

3. 사업시행면적 : 785 평 (약 2,591㎡)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대문구 신촌동 134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 천 환

5. 사업착수, 준공예정년월일

가. 착수년월일 : 1975. 10

나. 준공예정년월일 : 1975.11.30.

◎서울특별시고시제 147 호

서울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 변경 (폐지)

1. 당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다 음과 같이 일부변경 (폐지) 하였 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 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시는 당시도시계획국 도시 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게 한다.

1975. 9. 22

서울특별시장

가. 노선변경조서 (폐지)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폐지	소로	3		6m	44m	성부구동소문동 4앞	동소문동 4 앞	
"	"	3		6	27	서대문구대신동 21-1	대신동 21-1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218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177 호 (62.12.8) 로 고시된 궁정동-효자동간 도로개설 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도 부터 14 일간 일 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9. 19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1. 사업 시행의 위치 : 종로구 궁정동 11-3 - 궁정동 37-1 간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궁정동-효자동간 도로 신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1) B = 25 m
(2) L = 260 m
4.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 : 75.9 - 76. 11.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 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자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효 자				137-2	도로	16.0	효자동 137-2	김명자
2					132-20	"	6.7	132-20	이세웅
3					132-11	"	9.8	132-11	이창순
4					132-12	"	10.8	132-12	박복남
5					132-13	"	13.5	132-13	박남성
6	궁정동				66-4	대지	4.4	궁정동 66-1	정학근
7	"				66-1	"	0.3	66-1	"
8	"				69-4	"	38.6	69-4	이순복
9	"				69-3	"	3.3	69-3	설원식
10	"				68-2	"	8.0	68-2	영인미원
11	"				66-5	"	15.4	66-5	정학근
12	"				67	"	25.0	67	이정호
13	"				59-2	"	0.5	59-2	박은섭
14	"				67-1	"	1.7	67-1	이정호
15	"				66-2	"	23.0	66-2	김익수
16	"				59-3	"	0.2	59-1	박은섭
17	"				60-2	"	3.3	60-2	이용거
18	"				60	"	31.3	"	"
19	"				60-1	"	0.2	"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20	궁정동				64-3	대지	21.0	궁정동 64-3	이룡기
21	"				62-5	"	22.7	62-5	김삼연
22	"				60-3	"	25.7	60-3	김상진
23	"				61	"	36.0	61	최옥상
24	"				62-6	"	14.0	62-6	송년태
25	"				56-3	"	0.3	56-3	이재식
26	"				43-2	"	23.3	43-2	이정희
27	"				41-1	"	36.7	41-1	양경린
28	"				40-1	"	20.1	40-1	신영지불
29	"				28-1	"	19.0	28-1	유봉춘
30	"				41-2	"	20.3	41-2	서건주
31	"				42-2	"	21	42-2	이정희
32	"				35-2	"	36.7	"	"
33	"				36-1	"	56.0	"	"
34	"				36-3	"	9.2	36-3	임창기
35	"				37-1	"	0.2	37-1	재단법인 유화학원
36	"				32-2	"	23.0	32-1	이미자
37	"				34-2	"	51.2	34-2	이정희
38	"				33-2	"	38.1	33-2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39	궁정동				34-1	대지	5.3	궁정동 33-2	이정희
40	"				31-1	"	21.0	31-1	정세원
41	"				31-3	"	6.2	31-3	김유근
42	"				23-2	"	6.9	23-9	양정호
43	"				25-1	"	19.0	25-1	이동성
44	"				25-2	"	19.0	25-2	오문섭
45	"				29-3	"	21.0	29-3	이세웅
46	"				27-1	"	11.9	27-1	이경천
47	"				15	"	20.0	15	박민조
48	"				14-3	"	0.7	14-1	"
49	"				16-5	"	40.0	16-5	변태희
50	"				16-10	도로	34.6	16-4	홍순경
51	"				16-7	"	10.4	16-7	장덕남
52	"				16-8	대지	6.8	16-8	안영준
53	"				14-9	"	5.0	16-3	원석주
54	"				16-6	"	25.0	16-6	변옥영
55	"				13-1	"	40.0	13-1	김도연
56	"				13-39	"	3.4	13-39	김희철
57	"				13-43	"	24.0	13-43	박계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58	중정동				13-22	대지	14.0	중정동 13-22	신삼덕
59					13-35	"	12.0	13-35	최석희
60					13-42	"	27.3	13-42	남창덕
61					12-5	"	24.5	12-5	민병린
62					12-4	"	4.0	12-4	김병기
63					13-3	"	2.8	"	"
64					11-3	"	21.7	11-3	황용금
65					13-6	"	28.0	"	"
66					13-37	"	5.0	13-37	강광손
67					13-44	"	9.8	13-44	박기화
68					13-40	"	11.0	13-40	박진호
69					25-3	"	12.0	25-3	정윤상
70					24-2	"	4.5	24-2	김윤갑
71	신교동				61-1	도로	3.3	신교동 61-1	금정자진
72	"				61-2	대지	21.3	61	"
73	"				62-2	"	3.7	62-2	손란순
74					70-17	"	10.0	"	황용환
75	중정동				26	"	16.0	중정동 26	김학식
76	"				25-4	"	8.0	25-4	박기순

연 번	번 지	총 평 수	수용 평 수	비 고
49	효 자 동 132 - 3	11.0	4.5	복 조 와 급
50	" 132 - 1	11.0	1.4	"
51	" 137 - 1	11	1.8	"
52	궁 경 동 69 - 1	13.0	2.0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22 호

도시 계획 사업 (공용 의 청사)

시 행 자 지 정 승 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8 호

(75.8.29) 로 도시 계획 시설

(공용 의 청사) 결정 된 도시 계획 사 업의 시 행 자 지 정을 다음 과 같이

승 인 하였 기 도시 계획 법 제 23 조 제 5 항 및 건설 부 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이 를 공 고 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국 도시 계획 과와 천 호 출 장 소

시 민 봉 사 실 및 사 업 시 행 청 인 범 무 부 에 각 각 비 치 하 고 토 지 소 유 자 및 이 해 관계 인 에 게 보 이 게 한 다.

1975.9.22

서울특별시 장

1.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락동 산 5의 31 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 계획 시설 (공용 의 청사) 사업 성동구 치 소 시설 사업

3. 사업 시행 면적 : 77,550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상행 : 법무부장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 일

가. 착수 년월일 : 1975. 10

나. 준공예정년월일 : 1976.12.31

6. 조 건

가.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법 제 28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사 송달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2 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 도시계획법 제 78 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이 사업시행에 있어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시설의 설치와 기타 행정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이 지정승인으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며 별도 사업실시계획을 인가 받아야 한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제 223 호

화재경계지구지정해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다음 지구는 소방법 제 49 조 제 1항의 규정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요건이 해소되었으므로 이를 해제한다.

1975.9.29

서울특별시장

위	지
차	구
명	명
마포구 아현 2 동 산 7 번지	아현 2 동 화재경계지구
마포구 공덕동 429	공덕역해상가 화재경계지구

궁정동-신교동간 전몰조서

일 번	번	지	총 평 수	수용 평 수	비 고
1	효 자 동	1	7.0	7.0	무 조 와 급
2	궁 정 동	11-3	32.0	32.0	"
3	"	12-2	14.0	14.0	"
4	"	13-6	16.1	16.1	"
5	"	13-7	17.0	6.7	"
6	"	13-30	13.0	40	"
7	"	13-24	20.3	11.7	"
8	"	13-35	6.0	6.0	"
9	"	13-22	8.0	8.0	"
10	"	13-21	13.0	13.0	"
11	"	13-18	12.0	4.3	"
12	"	13-5	7.0	7.0	"
13	"	13-19	5.0	5.0	"
14	"	16-3	14.0	14.0	"
15	"	16-2	15.0	1.5	"
16	"	16-1	19.0	2.5	"
17	"	16-6	10.0	10.0	"
18	"	13-1	15.0	15.0	"
19	"	16-5	19.0	19.0	"
20	"	24	9.0	1.0	"
21	"	23	9.0	1.3	"
22	"	25-1	10.0	10.0	"

연 번	번	지	총 평 수	수용평수	비	고
23	궁 경 동	25 - 31	5.0	5.0	목	조 와 급
24	"	26	6.0	6.0	"	"
25	"	25 - 4	3.0	3.0	"	"
26	"	25 - 2	11.0	11.0	"	"
27	"	29 - 1	10.0	10.0	"	"
28	"	27	16.0	16.0	"	"
29	"	31 - 2	5.0	5.0	"	"
30	"	31 - 1	11.0	11.0	"	"
31	"	32	14.0	7.0	"	"
32	"	38	20.0	20.0	"	"
33	"	41 - 2	9.0	9.0	"	"
34	"	41 - 1	13.1	13.1	"	"
35	"	40	25.0	22.0	"	"
36	"	62 - 1	34	30.0	"	"
37	"	61	41.3	41.3	"	"
38	"	60 - 3	23.0	23.0	"	"
39	"	60	57	57	"	"
40	"	64 - 1	18.0	18.0	"	"
41	"	66 - 2	15.0	15.0	"	"
42	"	66 - 1	15.0	15.0	"	"
43	"	68 - 1	14.0	14.0	"	"
44	"	68 - 2	8.0	8.0	"	"
45	"	67	12.0	12.0	"	"
46	"	69	22.0	14.0	"	"
47	효 자 동	132 - 13	11.0	9.3	"	"
48	"	132 - 12	11.0	8.0	"	"

○ 서울특별시공고제 224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177 호 (62.12.8)
로 고시된 을지로3가~4가간 도
로확장시설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
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
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
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행정
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9. 25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시행의 위치 : 중구 을지로 3 가
140~을지로 4 가 로타리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을지로 3 가
4 가간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1) L = 459 m
(2) B = 22 m → 220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1975.8.1 ~ 75.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조사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 첨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용 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을지로3가				141-4	대지	0.2	강남1가35-2	이광수 외 1인
2	"				140-12	"	7	344-9	이성호
3	"				139-7	"	11	"	"
4	"				140-11	"	0.9	필동2가134-9	최인형
5	"				139-8	"	9.5	"	"
6	"				139-4	"	2.5	"	국

순위	소 계 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7	율지로3가				140-10	대지	1.6	성왕실리동71-108	박준환
8	"				139-5	"	10	"	"
9	"				140-9	"	3.1	성동구논현동 산7외 16	유제권
10	"				139-4	"	6.8	"	"
11	"				139-9	"	1.2	"	국
12	"				140-8	"	4.2	보문동6가 64	박윤영
13	"				139-3	"	7	"	"
14	"				140-1	"	6	139-1	장원한
15	"				139-1	"	6	"	"
16	"				146	"	11	"	국
17	"				147	"	14	146	홍중만
18	"				148	"	11	율지로3가148	서순성
19	"				149	"	1	"	유정숙
20	"				151	"	3	"	"
21	"				152-2	"	8.8	명륜동1가195-1	김정학
22	"				230-4	"	2.8	230-1	임창수
23	"				230-2	"	28	"	국
24	"				231	"	9	"	귀천대 수입
25	"				234-5	"	0.1	임정동 86	심윤구
26	"				233	"	11	227	박근택
27	"				232	"	1	"	박근택
28	"				234-4	도로	14.4	충무로5가 25	이부영
29	"				235	"	2	271	이부영
30	"				237-2	대지	8.4	"	귀천대 수입
31	"				236	도로	4	"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32	월지로3가				234-3	도로	9	충무로5가25	이부영(하인)
33	"				238	대지	5	271	경정순(하인)
34	"				239-2	"	7	"	"
35	"				240-6	도로	11.5	충무로5가25	이외영(하인)
36	"				240-8	"	12.3	보문동7가 105-1	이외상(하인)
37	"				239-1	"	6		이외경(하인)
38	"				240-5	"	14		국
39	"				241-27	대지	18.7	남산동3가31-2	용이식
40	"				241-24	"	0.2	241	김종철
41	"				239-3	"	7	보문동7가 105-1	이외상(하인)
42	"				241-6	"	12.7	241	김배연
43	"				241-21	"	1.5	초동10-8	손창득
44	"				241-22	"	11	"	박병욱
45	"				245-20	"	17.3	"	"
46	"				241-25	"	5.4	241	김종천
47	"				246-3	"	5.1	"	"
48	"				246-1	"	5	"	"
49	"				245-1	"	5	"	"
50	"				245-2	"	3	"	"
51	"				241-23	"	4.4	"	"
52	"				247-1	"	8	동대문용두동28	유세범
53	"				247-2	"	7	월지로2가 101-30	김합경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54	율지로3가				247-3	대지	8	마포구현석동108-41	이영치
55	"				145-2	"	0.1	효자동 138-12	김병하
56	"				242-6	"	1.2		서울시
57	"				249-2	"	5.6		국
58	"				250-4	"	4.8		국
59	"				250-5	"	0.7	인현 2가 60	김용택
60	"				250-6	"	16.7	"	"
61	"				250-3	도로	15		국
62	"				251-4	대지	4.7	오장동 200-5	임용석
63	"				251-5	"	14.7	"	"
64	"				251-6	"	13.8	율지로 3가 251-3	이순남외1인
65	"				300-3	"	4.3	마포구현석동108-47	이영치
66	율지로4가				1 - 2	"	9	신림동 162	표덕수
67	"				1 - 3	"	19.1		국
68	"				1 - 5	"	1.7	1 - 1	김만득
69	"				5 - 6	"	2.1	효창동 67	김항재외1인
70	"				5 - 7	"	0.8	"	"
71	"				17- 7	"	32.6	14-1	오동하외2인
72	"				17- 6	"	2	18	최수천
73	"				20 - 6	"	0.1		국
74	"				20 - 5	"	0.4	18	최수천
75	"				18	"	9.7	율지로 3가 316	홍길현
76	"				18 - 1	"	1.2	"	"
77	"				18 - 2	"	7.3	18	최수천
78	"				19- 4	"	2.9	율지로 3가 316	홍길현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79	울지로4가				19-5	대지	1.1	울지로3가316	홍길현
80	"				30-1	"	61.4		국
81	"				43-3	"	19.1	중로계동25-4	최남기외1인
82	"				43-4	"	0.2	소공동 116-1	서울은행
83	"				45-2	"	26.3		적선역산Co
84	"				41-2	"	0.2	소공동 116-1	서울은행
85	"				46-3	"	1.3	산림동 52	윤영서
86	"				46-2	"	18.3	충무로5가 49	하석번
87	"				47-2	"	32	주교동 78	김우삼
88	"				48-2	"	12.3	40	성현분
89	"				49-7	"	28.3		국
90	"				49-6	"	10.5	신당동353-31	이우범
91	"				64-2	"	0.5	울저2가 166	최선복
92	"				65-2	"	21.1	울저2가 166	"
93	"				65-1	"	2	하월곡동 90	"
94	"				67-2	"	14.4	"	"
95	"				66-1	"	2.7	대구서남산동2구657	차완용
96	"				66-2	"	7.3	86-2	최요선
97	"				66-3	"	11	강릉2가 186-69	박은욱
98	"				68-1	"	1.3		국
99	"				68-2	"	5	대구서남산동2구657	차완용
100	"				68-3	"	5.7	69-1	윤두원
101	"				69-1	"	4.3		국
102	"				69-2	"	11.3	대구서남산동2구657	차완용
103	"				69-3	"	11.4	69-1	윤두원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04	울지로4가				70-2	대지	8.9		윤득수
105	"				71-3	"	12.2	71	강종심
106	"				71-4	"	4.3		국외1인
107	"				72-4	"	2.4	태평로2가330	한국특수 공업 Co
108	"				72-5	"	1.7	"	"
109	"				77-2	"	0.1	77	김희혁
110	"				78-2	"	15	합정동386-14	이영화
111	"				79-1	"	5.3		국
112	"				84-2	"	11.6	잠충2가193-109	김정출
113	"				85-3	"	23.1	85-1	최영일
114	"				79-9	"	24.7	79	진소여
115	"				79-8	"	9.3	92	노성국
116	"				79-7	"	1.5		국
117	"				80-6	"	0.5		국
118	"				80-7	"	0.3	92	노성국
119	"				80-8	"	15.4	성북동소문동2가71	최영배
120	"				80-9	"	14.1	188	구명서
121	"				80-10	"	13.3	79	진소녀
122	"				80	"	0.5		국
123	"				80-1	"	3		국
124	"				80-2	도로	6.7		국
125	"				80-3	대지	9.7	79	윤영섭
126	"				81	"	12	주교동 186	최충선
127	"				82	"	21	"	"
128	"				82-1	"	0.5	"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용 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29	삼지토4가				83	대지	22	주교동 82	최한상
130	"				86-1	"	22	주교동 186	최충선
131	"				90-1	"	31	주교동 186	최복선
132	"				91-1	"	1.4		국
133	"				91-2	"	19	성북동소문동1가기	최영배
134	"				91-3	"	2		국
135	"				91-4	"	18.9	91	장만용
136	"				91	"	1.5		국
137	"				91-5	"	9.4	60	임동명
138	"				91-10	"	4.7		국
139	"				91-11	"	0.9		국
140	"				91-12	"	3	91	장만용
141	"				91-9	"	0.4		국
142	"				91-15	"	1.5	예관동 115-7	노순희
143	"				91-16	"	3	91-6	조계도
144	"				91-8	"	0.7		국
145	"				91-14	"	0.4	예관동 115-7	노순희
146	"				92-3	"	0.3	91	조영숙
147	"				92-1	"	0.3		국
148	"				92-6	"	3.7		국
149	"				91-6	도로	2.5		국
150	"				92-	대지	3	예관동 115-7	노순희
151	"				92-11	"	0.1	"	"
152	"				92-2	"	4.9	993	조계도
153	"				92-4	"	6	91	조영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54	울지로4가				92-5	대지	3		국
155	"				92-7	"	11.1	92	노성숙
156	"				92-8	"	9	79	진소녀
157	"				92-9	"	2.9		서울시
158	"				91-7	"	2.4	92	노성주
159	"				91-13	"	11.4	91	조계영
160	"				92-10	"	0.7	예관동 155-7	노순희
161	"				14-3	"	4	부산시영도구 남항동3가115	오동하
162	"				255-12	"	0.2	255	송성순
163	"				255-13	"	4.8	강화면 신문리 105	박학천
164	"				255-14	"	13.8	255-9	김부용
165	"				255-10	"	27.1	255	조명복
166	"				255-11	"	0.1	65	박재복
167	"				254-2	"	37.6	254	윤희
168	"				254-1	"	2.1	2.11	"
169	"				250	"	19	"	"
170	"				251	"	12	254	"
171	"				252	"	10	"	"
172	"				252-1	"	2.5	"	"
173	"				253	"	15	"	"
174	"				253-1	"	1.3	"	"
175	"				247-3	"	2.9	247	진금순
176	"				203-1	"	0.3	205	이이호
177	"				204-1	"	21	"	"
178	"				205-1	"	6.7	"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거목	지적	지번	거목	지적	주소	성명
179	울지로4가				205-2	매	17.3		국
180	"				206-1	"	37	장충2가 116	남두홍
181	"				206-3	"	0.1	"	"
182	"				206-4	"	0.2	"	"
183	"				206-5	"	0.5	187	경성북인 합자회사
184	"				207-1	"	2	예관동 6	강주심의1인
185	"				207-2	"	13	"	"
186	"				207-3	"	8	"	"
187	"				202-2	"	22	장충2가 116	남두홍
188	"				202-5	"	0.3	"	"
189	"				211-3	"	0.1	홍계동 266-13	김영희
190	"				211-2	"	0.9	"	김영희의1인
191	"				211-1	"	0.1	212	정봉길
192	"				211-4	"	0.4		국
193	"				202-3	"	14	장충2가 116	남두홍
194	"				208-2	"	13.8	예관동 6	강주심
195	"				209-3	"	23	209-1	고성훈
196	"				210-5	"	6	홍계동 266-14	김영희의1인
197	"				210-6	"	0.2	212	정봉길
198	"				212-5	"	1.6	"	"
199	"				212-6	"	0.3		국
200	"				44	"	1		귀속

건 물 조 서

소 계	지 번	구 조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울지 3 가	140-7	목 조 와 습	17	140-7	이 성 호	
"	140-6	"	20	월동 2 가 134-9	최 인 영	
"	140-5	"	19.33	예강동 1 의 31	박 춘 환	
"	140-4	"	16	성동구논현동산 7-16	유 재 현	
"	140-3	"	20	보문동 6 가 64	박 윤 영	
"	139-1	"	21.32	139-1	장 원 한	
"	147	"	34	145	홍 중 만	
"	148	"	10 ⁰	149	서 순 성	
"	149	목 조 도 단	5	149	유 정 숙	
"	152	목 조 와 습	7	명륜동 2 가 195-1	김 정 학	
"	247-250	목 조 도 단	70	성북구수유동 130	이관호의 5인	
울지 4 가	1-2	연 와 조 후 밴 스	15.6	산림동 162	표 덕 수	
"	14-3	목 조 도 단, 와 습	13	14-1	오 동 하	(외습) 도단4
"	17	목 조 와 습	10	17	서 건 석	
"	17	"	14.2	17	황 영 철	
"	17	"	18.33	산림동 52	윤 영 서	
"	18-2	"	17	18	최 수 천	
"	19	"	22.26	18	홍 길 현	
"	46-1	"	2	18	"	
"	46-2	목 조 도 단	16	충무 5 가 42	허 석 면	
"	47	"	32		김 무 삼	
"	48	"	19		성 현 분	
"	49-3	"	11		윤 대 덕	
"	"	"	8		조 태 영	

소 계	지 번	구 조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울지로4가	64,65,67	목 조 와 읍	76.66	울지 2 가 166	최 선 복	
"	66-3	"	20	강중 2 가 186-39	백 문 유	
"	66-2	"	16	66-2	최 모 선	
"	69-2	"	24.13	66	차 완 용	
"	69-3	"	26	69-1	윤 득 원	
"	70	"	6	중림동 323	윤철수외5인	
"	71-1	"	8	71-1	강 중 심	
"	71-2	"	5	태평 2 가 330	한국부수 공업 Co	
"	78	"	6	성동구 동소문동6가52	이 영 화	
"	72-2	새마을부락와읍	2.25	태평 2 가 330	한국부수 공업 Co	
"	80-3	연 와 조 와 읍	18.5	79	윤 영 삼	
"	80-8	"	38.3	동소문동1가71	최 명 세	
"	80-9	"	9.27	188	구 명 서	
"	80-9	"	9.27	울지 6 가 18-49	구 덕 희	
"	80-10	"	18.5	92	전 소 역	
"	79-9	목 조 와 읍	19.7	"	"	
"	92-8	"	16.16	"	"	
"	79, 80 91, 92	"	16	회현 2 가 78-2	노 성 주	
"	"	"	2.61	"	경림전기 Co	
"	"	"	5.70	예관동 115-7	노 순 희	
"	"	"	35.3	91	이 수 연	
"	"	"	84.87	"	국	
"	"	"	9.75	"	조 계 영	

소재	지번	구 조 와 읍	지적	소유자주소	성명	비고
윤지로 4가	91-2	북 조 와 읍	17		최명백	
"	91	"	15.78		장만용	
"	91-5	"	6.25	91	임플명	
"	91-16	"	7.25	293	조계도	
"	83	"	27	82	최한상	
"	86-1 82,90-1	"	78		최홍선	
"	84	"	6	장충2가 193-109	김정출	
"	85-1	"	19	신림동 41-2	최진래	
"	255-6	"	0.30	255	송성순	
"	255-8	"	10		박학전	
"	255-9	"	26	255-9	김부용	
"	255	"	41.4	255	조명복	
"	254와 5 필	"	200		윤세준의인	
"	203-3	"	70		이이호	
"	247-1	"	6.2		진금순	
"	306-1	"	160.94		남두홍	
"	209-1	"	27		고성훈	
"	208	"	26	208	강주심	
"	210-1	"	12	홍계동 266-14	김영희의인	
"	(210) 212	"	3.2		정봉길	
"	"	"	0.4		양윤천	

○ 서울특별시공고제 226 호

환지예정지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에 있는 망우추가 및 화양추가 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 188 호 (75.8.26) 로 공람공고한 바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변경을 확정하고 환지예정지를 별첨도와 같이 지정하였기 동법

제 47 조 및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예정지 변경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행정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변동 송부할 것이나 미수령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

1975. 9. 25

서울특별시장